

#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1.03.02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의 도서관 구분을 공립 공공도서관, 작은도서관, 장애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조항이 배치되는 사용료 등 징수 규정을 조문 정리하며, 그 밖에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, 작은도서관, 장애인 도서관 등으로 구분하며, 세부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” 구청장 “이라 한다)이 정한다.” 로 함. (안 제2조제2항)
- 나. “제1호와 제2호” 를 삭제하고, “제3호부터 제5호” 까지를 “제1호부터 제3호” 까지로 함. (안 제3조제1호, 제2호)
- 다. 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” 로 함. (안 제5조제3항)
- 라. “풍부한 자” 를 “풍부한 사람” 으로, “전임자” 를 “전임위원” 으로 함. (안 제6조제3항)

- 마. “구청장은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,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” 라고 함. (안 제11조제1항)
- 바.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”으로 하고, “「한부모가정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”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자”로 함. (안 별표4나목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따른” 을 “따라” 로 한다

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, 작은  
도서관, 장애인 도서관 등으로 구분하며, 세부명칭은 서울특별시 마  
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안 제3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 
제3호까지로 한다.

제3조제1호와 제2호 중 “라 함은” 을 “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 
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, “자로” 를 “사람으로”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 를  
“구청장” 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 
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 
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하여” 를 “위하여 도서관별로” 로 한다.

안 제6조제3항 중 “풍부한 자” 를 “풍부한 사람” 으로, “전임자” 를  
“전임위원” 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,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 
따른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안 별표4 나, 이용자 감면기준 중 “「장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”으로 하고, “「한부모가정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”을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자”로 한다.

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·보존·열람·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,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 및 명칭)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관할구역 안에 두며, 명칭은 “마포구립 서강도서관”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 <u>따른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u>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</u></p> <p>② 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도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-----  <u>따라</u>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, 작은도서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관의대출자료”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사용료 등”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이용 및 도서관내 비치된 자료·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,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</li> </ol>	<p>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공공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기준인 건물면적 264㎡ 이상의 도서관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.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“사용료 등”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이용료,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및 도서관내 비치된 자료·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, 그 밖에 회원증</li> </ol>	<p>관, 장애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며, 세부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한다.</p> <p>제3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    란 -----     -----</li> <li>2. -----란-----     -----     -----</li> <li>3. -----이란-----     -----     -----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도서관을 이용하는 <u>자로부터</u>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관장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되,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         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되,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            ③ <u>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하고, 도서관의 시설·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·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---명-----명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	<p>-----<u>사람으로</u>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② -----<u>구청장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③ <u>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           ----- <u>위하여 도서관별로</u>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③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문화계·교육계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③ 위원은 문화계, 교육계,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<u>풍부한 자</u>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남은 임기</u>로 한다.</p> <p>④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<u>풍부한 사람</u> ----- ----- ----- <u>전임위원</u> ----- -----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1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제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하여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.</p>	<p>제11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도서관의-문화프로그램 수강료,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제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----- -----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<u>금액 및 징수기준, 감면기준, 환급규정</u>-----</p>	<p>제11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,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

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〈신 설〉</p>	<p>[별표] 4.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,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 나. 이용자 감면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9 560 1379 1469"> <thead> <tr> <th>감 면 대 상</th> <th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</td> <td rowspan="6">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<u>본인</u>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</td> </tr> <tr> <td>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</td> <td rowspan="3">1/2 감면</td> </tr> <tr> <td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</td> </tr> <tr> <td>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<u>본인</u>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	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 감면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	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	<p>[별표] 4.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가. (개정안과 같음)  나. 이용자 감면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91 571 2051 1465"> <thead> <tr> <th>감 면 대 상</th> <th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</td> <td rowspan="6">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<u>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</u>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</td> </tr> <tr> <td>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</td> <td rowspan="3">1/2 감면</td> </tr> <tr> <td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</td> </tr> <tr> <td>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<u>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</u>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	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 감면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	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
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<u>본인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 감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<u>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 감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